

전국의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2005년 을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과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으로서 주택, 도로, 철도 등의 건설을 통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창출효과가 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이러한 공헌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근로자, 사업주, 정부와 재해예방단체가 합심하여 3년 연속 증가하던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올해에도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부문 건설은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유지와 내수부양을 위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설재해 감소추세를 이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노·사·정과 재해예방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써,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 정부의 지도·감독, 재해예방단체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서민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은 산재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업장의 위험요인은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산재예방활동에 근로자 여러분들의 참여는 필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더욱이 작업장에 안전시설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 하여도 근로자 여러분들이 작업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산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거푸집반침대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작업근로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은 기본이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설안전 체험교육, 현장방문 안전교육 등을 확대·내실화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야 말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용, 근로자 사기저하와 생산차질, 기업이 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의 사전 인지와 위험요인 개선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근로자의 자발적인 산재예방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자율안전관리 여건조성 및 중소규모 취약현장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첫째, 건설업체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제도정비에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안전기준, 안

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의 제도가 보다 현장의 안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관리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치르는 비용이 준수할 때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사업주가 인식도록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대형사업장과 중소사업장 간의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Safety Divide)는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규모 현장은 재해예방 기술능력 부족,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여 재래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안전패트를 점검 등에 일선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관리의 시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예방지도활동과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부족한 재해예방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산재예방 노력과 더불어 재해예방단체의 앞선 기술력을 사업장에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예방단체는 기업의 안전보건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점차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을 전개하기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재해예방단체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단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객지향적 기술지원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기술협회 회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이 시행되는 첫 해로서 정부는 안전선진국 건설이라는 중장기적 비전하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산재예방의 당사자인 노·사·정의 확고한 실행 의지와 재해예방단체의 협력이 없다면 결코 안전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인명존중의 숭고한 이념과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실현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본이 되는 안전선진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굳은 결의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건설안전기술협회와 협회회원 여러분 앞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1월 1일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이 채 펠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의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 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단순한 주택 개·보수의 확대 개념에 불과하여 신축과는 달리 악식 설계(구조계산서 생략)와 단순감리(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감리)가 허용되고, 안전진단의무도 생략되는 한편, 증축 범위도 별도로 제한(일반건물은 10%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주택의 안전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금번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 먼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금지된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골조)의 잔존 수명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붕괴의 위험이 크고 구조체 보강시 보강비용이 과다소요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금지된다.

2.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기능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축 범위를 각 세대의 연면적(전용면적)의 10분의 2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로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현행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은 10% 이내로 증축범위를 제한)

아울러 리모델링시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복도 및 발코니를 전용면적화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여 터널 형태의 평면구성 및 주차 예전 불량 등 주거 환경 악화를 최소화하였다.(증축범위에 계단실, 지하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은 제외됨)

3. 구조안전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의 구조성능 검토와 보강공법, 신규부분과 기존부분의 접합, 시공 후 접합부 균열발생 방지 등 신축주택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구조계산서 포함),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구조안전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은 주택의 개·보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축주택과 달리 배치도, 평면도 등 의 기본설계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구조안전의 검토가 부실하여 리모델링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4. 리모델링에 대한 감리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단순감리가 가능하므로 시공부실이 우려되고 공사중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하게 하고 구조기술사의 비상주 감리도 추가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공사는 모두 상주감리 - 300세대 이상 : 건기

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

5. 사업주체의 기간시설의 설치부담 범위를 축소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 기간시설의 설치부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선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간시설까지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해 주택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간시설에 한하여 사업주체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협회 흥성희 과장 한국안전학회 주최 추계학술발표회에 논문발표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2004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 10월 21, 22 양일간 전북무주에 소재한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기계, 화공, 인간/시스템,



교통/재난/보안 등의 세부주제별로 한국산업안전공단, 호서대학교, 한경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한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번 학술 발표회에 우리협회에서는 한경보 부회장이 건설안전분야 회장으로 참석했으며, 건축진단부 홍상희 과장이 '한중콘크리트 시공 시 이용되는 혼화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제73회 기술사합격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30일 제73회 기술사 자격시험 합격자 237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기계제작기술사 등 38개 종목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의 영예는 전기·철도 기술사에 합격한 강광식 씨(56)가, 최연소 합격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박도현 씨(28)가 각각 차지했다. 최고득점 합격자는 90점을 받은 공장관리 종목의 남영학 씨(46). 황남균 씨(51)는 이미 건축시공과 건설안전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계획 기술사에도 합격해 3개 기술사 자격증을 갖게 됐다. 또 조경분야의 박유정 씨(37)는 유일한 여성 합격자가 됐다. ◆ 건설안전기술자 : 배병문 · 오형국 · 윤병수 · 은남권 · 최영혜 · 홍창용 · 황경수 (이상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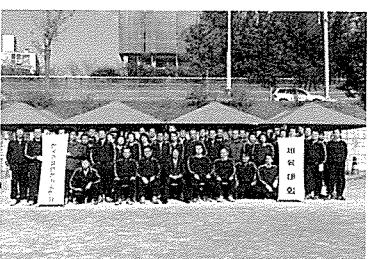
노동부 주관 산업안전포럼 열려



노동부는 11월 2일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송병춘 노동부 안전정책과 서기관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이명구 서울보건대 안전보건과 교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안병수 한국건설재해예방(주) 대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관심을 끌었다.

협회장배 사내 체육대회 개최

협회 임·직원간 친목도모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협회장배 사내 체육대회가 11월 12일 오후 뚝섬 고수부지 체



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축구·건축부, 배구·토목부, 종합우승·건축부가 차지한 이번 대회에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관련기사 32~33면)

리모델링 증축범위 30%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24~10.14)를 거쳐 11월 5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 한의 범위를 25m²(7.56평)에서 30m²(9.0평) 이내로 조정하였다.

또한,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주택의 기능 회복을 위한 계단실·엘리베이터 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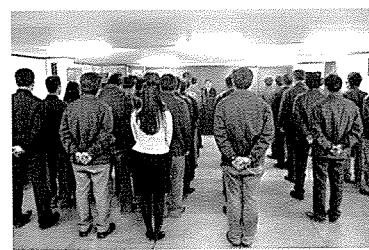
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 없이 규제심사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주택법개정안은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4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2005년 시무식

희망찬 2005년 을유년 시무식이 1월 3일 우리협회 3층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재천 회장은 올 한해 전 직원이 일심동체로 건설안전의 새 역사를 쓸다는 각오로 각자의 임무에 충실히 것을 당부했다.



건설안전 기술사 1차 합격자 간담회 개최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간담회가 지난 11월 4일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한경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업에 종사하며 시험에 응시 합

격에 이르기까지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건설안전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합격자들은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후에도 지식공유 등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28~29면)



산업안전공단 주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간담회 열려

2005년도 정부의 건설재해예방 정책 설명과 2004년 하반기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에 대한 평가계획 설명을 위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담회'가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산업안전기술지도원 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천지도원장의 인사말과 경인지방노동청 허석혁 근로감독관의 기관평가계획 및 기술지도 내실화 방안, 건설안전팀장의 최근 중대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발표에 이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 등 참석자들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인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 수립과 관련한 조찬 간담회가 12월 3일 팔레스호텔에서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과장, 산업보건환경과장, 담당 서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협회 최재천 회장 및 신입안전정책분과위원회 지문위원, 산업안전협회장, 산업보건협회장 등 노동부와 각계 전문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의 수립배경 및 비전과 목표, 향후 전망을 요약 게재하였다.

I. 계획수립의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

쳐 중장기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 ('91~'96년)

-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97~'99년)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00~'04년)

○ '04년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그간의 중장기 계획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 중장기 계획

을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냉철한 평가,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새로운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전망 등을 토대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수립추진

III. 성과 전망

- 재해율 감축 속도의 하방경직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대두,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계획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II. 비전과 목표

비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통한 '안전복지사회' 달성

목표

-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Irrfa) 구축
-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

- 사망재해 다발업종 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 전통적 유해·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에 능동 대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과정의 효율성 제고

취약부문 중점관리	자율산재 예방 활동 촉진	근로자의 건강관리 증진	노·사의 안전의 식제고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 사망재해다발 업종 관리강화	- 노사 협력적 산 재예방활동 기 진	- 작업관련성 질 환 예방강화	- 노사의 법 준수 풍토 조성	- 산재예방 인프 라 구축
- Safety divide 해소 지원	- 반조성	- 평생건강관리	- 교육·홍보 활 동 강화	- 안전보건 기준 의 국제화
-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 자율 산재예방 체계 정착	- 체계 구축 - 쾌적한 작업환 경 조성		- 국제 협력 확대

고려하면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 업무상 사고재해율은 사고재해가 예방대책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03년 0.81% 보다 △25% 감소한 0.60%
 - 업무상 질병재해율은 최근들어 급증(특히, 작업관련성 질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03년 0.09%보다 △10% 감소한 0.08%
 - 업무상 사고사망재해율은 '03년 1.45%보다 △20% 감소한 1.16%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2009년 재해율은 '03년도 재해율 0.9%보다 △25% 감소한 0.6%대
 -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은 '03년 59,135천일보다 △20% 감소한 47,308천일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인명존중 이념의 바탕 위에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는 풍토가 정착되어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대형 사고가 사라지는 「안전복지사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회원 및 직원동정**■ 회원동정****▶ 신규가입(2004. 하반기)**

- | | |
|------------------------------|---------------------------------|
| · 홍창용: 벽산건설(주) 차장 기술사 | · 최용원: 시)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리 기사 |
| · 한석규: 벽산건설(주) 상무이사 기술사 | · 박찬승: 시)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리 기사 |
| · 김동준: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장 기술사 | · 홍상희: 시)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과장 기사 |
| · 황경수: 경기도청 전문위원 기술사 | · 최관용: SK건설(주) 부장 기술사 |
| · 조운행: (주)경호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기술사 | · 차정민: 코스토개발 과장 기사 |
| · 김철진: 삼익건설(주) 과장 기술사 | · 김태현: 프라임산업(주) STM 사업소 과장 기사 |
| · 임춘성: 시)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차장 기사 | |

▶ 승진

- 김종효: 노동부 보건환경과 과장 → 부이사관

▶ 자택이전

- 문정록: 주소이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번지 파크뷰 601동 305호
- 정희중: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주공아파트 2단지 217동 204호
- 김윤중: 주소이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동 LG빌리지 1차아파트 112동 701호
- 송재준: 주소이전 부천시 소사동 SK아파트 103-1508
- 이봉호: 주소이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9-1
- 최경일: 주소이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레미안아파트 118-401
- 안계현: 주소이전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7 삼성아파트 108동 1402호

■ 회원동정**▶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 오형국부장(기술지도부): 건설안전기술사 최종합격

▶ 신규채용

- 기술지도부 최용원 대리 (2004.10.06)

▶ 퇴직자

- | | |
|-----------------------------------|-----------------------------------|
| · 토목진단부 전문위원 서수원 (2004.10.30) | · 기술지도부(광주지회) 과장 김경환 (2004.08.31) |
| · 토목진단부 대리 류희룡 (2004.08.31) | · 기술지도부(광주지회) 주임 김남철 (2004.10.31) |
| · 기술지도부(제주지회) 차장 부태현 (2004.10.31) | |

조직도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건설 안전 기술사	건축 시공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토질 및기초 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건축사	공학 박사	건축품 질시험 기술사	건설 안전 기사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료 시험 기술사	계
기술 지도부	3	0	0	0	0	0	0	0	0	5	3	1	0	12
건축부	3	1	0	0	1	0	0	1	0	7	10	0	0	23
토목부	4	0	3	2	0	1	0	0	0	1	0	4	1	16
기획 (교육)	8	3	2	0	0	0	1	0	1	1	1	0	0	17
계	18	4	5	2	1	1	1	1	1	14	14	5	1	68

협회 업무 소개

■ 안전진단

▶ 안전점검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 : 동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2회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마다,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

▶ 초기점검

· 법적근거 :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과업범위 :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불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 향후의 점검 · 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 : 공사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 전 안전진단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42조의 2, 제44조 /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

· 대상 :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의 3 /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 대상 :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축, 플랜트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 전국 도서지방(단,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
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재사항

1.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 안전관리비 20% 환수(법 30조 1항)

2. 기술지도계약 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만큼 환수

3. 산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 최고 -3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대상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터널공사

5) 다목적 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 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벌칙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미제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진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상 : 1) 중대재해사업장 2) 50m 이상 터널공사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200m 이상 교량공사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안전컨설팅

· 대상 : 건설회사 전사업장

· 업무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2) 현장의 안전관리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 교육

· 종합안전관리 및 안전경영진단 본사 및 현장을 망라 무재해 도달을 위한 안전관리 대행 또는 지원·지도

- 안전관리체계 정립 위한 제반지원

- 안전교육 교재개발 또는 강사지원

· K-OHMS 18001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시범연수기관으로 지정(2001. 6. 19)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지정

·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 안전관리전문가 양성교육

회원가입안내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의 건설종합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 가입안내

• 회비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 문의 : 회원실 TEL)02-3444-4570 FAX)02-3444-4855

• 온라인 : 하나은행 210-071537-01204, 예금주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비 미납 회원분들께서는 미납된 연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바로 알려 주시면 협회지 '협회 소식' 란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